

1. 개정이유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286호, 2024. 2. 13. 일부개정, 2025. 2. 14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사항이 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하고, 삭제하려는 조문에 있던 약칭을 다른 조문에서 다시 약칭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의견서 삭제(현행 제2조, 별지 제1호서식 삭제)

- 1)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가 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에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나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“영”으로 약칭(안 제7조)

- 1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“영”으로 약칭하는 현행 제2조가 삭제될 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음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생 략

제 호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및 영 제10조의3제1항”을 “및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조의3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조(검토의견서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의2제4항에서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검토의견서”란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말한다.</u> 제7조(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) ① 법 제22조의4 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	<u><삭 제></u> 제7조(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) ① ----- --- 및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조의3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